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09년 4월 21일(화)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목 차 ◀

□ 안 건	1
□ 공청회 진술인	2
□ 진행순서	3
□ 진술요지	
▪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49
▪ 문승호(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63
▪ 구태언(대한변호사협회 이사)	77
▪ 이은우(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87
▪ 김민호(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103
□ 법 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 안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관련법안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안일자
180165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등 12인)	2008-10-30
180188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7인)	2008-11-11
180297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등 18인)	2008-12-11
18037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 14인)	2009-02-11

□ 공청회 진술인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학계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연구기관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겸임교수 ◦ 한국통신학회 이사 ◦ 국제전기통신연합 인터넷 멀티캐스트 통신 표준작업반 의장
관련업계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IMT 전략기획팀장 ◦ SK Teletech 기획조정실장
법조계	구태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검사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검사
시민단체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공동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정보통신·인터넷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 과학기술법연구소 소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	개 회
10:00-10:1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10:10-11:20	진술인 발표
11:20-12:40	질의·답변
12:40	폐 회

진 술 요 지

김 성 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김 성 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 이 글은 2008년 말 ~ 2009년 초에 발의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한다.) 개정법률안¹⁾과 관련해서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한성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된 통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여섯 개의 개정안까지 모두 고려해서 대안으로 바뀌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되었던 법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쟁점별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2.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

- 감청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방식은 입법기술상 ①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감청을 허용하는 방법과 ② 감청허용 대상범죄를 열거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 죄질에 따른 제한방식을 취하는 나라로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다. 열거에 의한 제한방식은 미국과 독일 등이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된다.

1) 2008. 10. 30.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안, 2008. 11. 11.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안, 2008. 12. 11. 최문순 의원 대표발의안, 2009. 2. 11.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 현행 통신비밀법상의 감청대상 범죄는 280개이다. 2001년도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391개 이었던 감청대상 범죄의 수를 지금과 같이 축소된 상태이다. 이는 352개의 감청대상 범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역시 300개 이상의 대상범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일단 대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대상범죄의 면면을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형법 제2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 외국에 대한 사전, 중립명령위반, 외교상비밀의 누설)는 미국과 독일 모두 통신감청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범죄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의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는 영역이다. 최근 5년간 이들 범죄에 대한 감청은 한 건도 없었다²⁾.
- 또 균형법상의 일부 범죄(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무태만의 죄, 위령의 죄)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법만 감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현실적으로 감청의 필요성이 큰 분야도 아니고 실제로 감청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것인 실정이다³⁾. 감청대상에서 삭제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새롭게 감청대상 범죄로 추가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기술유출범죄가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산업스파이를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되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일이 된다. 또한 기술유출범죄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첨단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한 번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7. 5., 8면.

3)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7. 5., 11면.

- 개정안은 대체로 이러한 방향을 따르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

- 수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통신감청 외에도 많이 있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이른바 강제수사는 모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통신감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와 동일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특수성이 한 가지 있다. 다름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 쪽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몰래 감청을 하고서도 자신들이 엿듣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함구하고 있으면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침해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침해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 기본권 보호는 요원해 질 일이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청설비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감청설비의 보유와 운영은 통신사업자가 맡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비로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신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 이렇게 통신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통비법은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방식에 의한 감청의 길을 열어 두었다.

- 나아가 통비법은 제1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을 구비하여야 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될 일이지만, 기본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되는 일이므로 개정안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 개정안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 수준의 입법안으로 판단된다.

[표] 미국·영국·독일의 통신사업자 협조의무 비교

국 가	협조의무의 내용	근거규정
	강 제 장 치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청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술조건 및 설비용량 구비 의무 • 통신장비 제조자 및 지원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조건이 구비된 통신장비에 한하여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의무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1만\$ 민사제재금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장관이 발부한 통지서에 기술된 내용 전부에 대한 협조조치 강구 의무 •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적 요건 및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후 통지서에 기재된 협조조치 강구 의무 	수사권규율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의무 	통신제한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비용으로 감청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설비 구성 의무 	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청을 위한 기술적 설비의 기술조건 등 세부사항 	전기통신감청령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5천€ 이하의 과태료 	통신제한법 제19조

○ 나아가 개정안은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선진국들의 예와 부합하는 입법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1) 위치정보 추가

- 현행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본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였는가를 확인해서 특정 통화를 할 시각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지국의 통신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문제는 GPS 단말기가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기지국 위치정보를 가지고 추적하는 경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특정 통화를 한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는 한편, 인권단체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반론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 개정안은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보관하였다가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한 내용으로서 통신이 이루어진 시점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현행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상의 ‘위치추적자료’와 비교해 볼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방식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처 피의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 아래 혐의자를 골라내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고 따로 따로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무 측면에서 인력이나 예산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괄 요청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 또한 긴급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도 가능하므로 현행 통비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사후허가제도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유

- 현행 통비법은 제13조의4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는 더 구체화 하거나 강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니라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요건 자체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현행 통비법의 규정은 과도하게 추상적이지 않다.

(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 통지절차

- 현행 통신비밀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를 제공한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가 종료되고 나서 그 사실을 통지하면, 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통지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치의 특성상 당사자가 조치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마련이어서 이다. 기본권이 제한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당사자에게 하는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당사자에게 하는가의 문제는 통지제도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관련된 행위주체는 신청자인 수사기관, 허가권자인 법원 그리고 제공자인 통신사업자 등 세 군데이다. 이 가운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6.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통비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통비법상의 당사자 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를 통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비피의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통지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피의자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통지를 하자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비피의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 피의자가 수신하거나 발신한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게 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피의자도 아니면서 피의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과 비밀이 노출되므로 그들에게도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 하지만 사실 압수·수색을 하면 그것이 전자우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똥한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비밀에 관련된 물건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피의자가 제3자에게 보낸 편지나 받은 편지 또는 제3자에 대한 기록이나 제3자가 기록한 문건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사생활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될 가능성은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항상 열려있다. 전자통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라는 말이다.
-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개인편지 한 박스를 압수하였다면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편지의 발신인 전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듯 감청된 모든 이메일의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하

기는 마찬가지이다.

7. 신고포상금 제도

-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개인비밀 침해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①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에 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② 감청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감청 관련 기록 보관 및 기술표준 제정, ③ 감청 관련 로그기록의 보존, ④ 감청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점검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여러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게 되는 불법감청의 가능성을 위해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인보다 불법감청 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 술 요 지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법안’ 공청회 진술인 의견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1) 대상 법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2008.10.30)(아래 “이한성법안”으로 줄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2008.11.11)(아래 “박영선법안”으로 줄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대표발의)(2008.12.11)(아래 “최문순법안”으로 줄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2009.2.11)(아래 “박영선법안”으로 줄임)

2) 서술방법

- 헌법적 쟁점별로 서술하면서 대상법안을 언급함

Ⅱ. 외국인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직접 감청의 문제점

1. 내용

- 이한성법안 “주요내용”: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밑줄은 인용자)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이한성법안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 제1문 생략 ...]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력’(?)과 책무 강화

- 이한성법안의 관련 규정: 감청장비 의무화(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일체 보관(제15조의2 제6항 및 제20조 제1항)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사실 통지(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통신감청권력의 민영화’ 위험성과 기업 내부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약화.4)

- 일정 부분 기업 부담으로 기업 관점에서 불필요하면서도 다른 한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문제: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통신수단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기술적 한계”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 통제의 분산: 국가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협조 요청과 사기업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자체에 대한 통제법리의 분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과 제공요청에 대한 통제법리의 분산.

2)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직접 통신제한조치[감청](?)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의 일종의 예방적 정보수집활동
-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직접 감청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

3) 외국인의 인권 침해 및 국제적 문제의 소지

-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개념의 불명확

4) 기업 보유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유출·판매하려던 또는 실제 유통시키거나 노출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5) 오길영, “통신비밀보호법, 통신국가보안법?,” 진보평론 제33호, 2007년 가을, 190쪽.

-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를 향유할 수 있”으며,⁶⁾ “각국 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⁷⁾

4)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적용가능성(?)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 중 밀줄친 부분의 불명확성⁸⁾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⁹⁾

5) 인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점

- 제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없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3항)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69쪽.

7) 권영성, 앞의 책, 177쪽.

8)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 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단체를 구성한 피고인 1로서는 범민련 또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공1997.2.15.(28),583]).

9)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성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광범위성

-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것을 다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으로부터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정의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과 여타의 기관을 구별해야 할 것이며,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해야 할 것임.
- 여타의 기관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경우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서 국가정보원법상 수사업무의 준용을 규정하고 이를 제6조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해서는 제7조를 ‘대외적인 정보의 제한적’ 수집활동에 한정시켜야 할 것임(수사업무와 무관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 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¹⁰⁾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같은 조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 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
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
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
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
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
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보
안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국가정보원법 제3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 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7) 참고: 미국 연방법전 제50편 전쟁 및 국방 제36장 대외정보감시

- 제1802조 법원의 명령 없는 전자감시 승인; 법무장관에 의한 보증; 의회 위원회에의 보고; 봉인 후 전송;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보상; 신청; 관할 법원

(a) (1) 다른 모든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선서하에 서면으로 다음의 사실을 보증하는 경우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하여 대외첩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최장 1년 동안 법원 명령 없는 전자감시를 승인할 수 있다.

(A) 전자감시가 전적으로

(i) 본편 제1801조 (a)(1), (2), (3)에 정의된 외국세력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송되는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기 위

한 것이거나

(ii) 본편 제1801조 (a)(1), (2), (3)에 정의된 외국세력의 공개적 및 배타적 통제하에 놓여 있는 재산이나 시설물로부터, 개인간의 대화 이외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B) 그러한 감시가 미국인을 통신의 일방으로 하는 어떠한 통신의 내용도 획득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C) 그러한 감시에 관하여 제안된 최소화절차는 본편 제1801조 (h)에 따른 최소화절차의 정의를 충족시킨다는 사실

다만, 법무방관은 위와 같은 최소화 절차와 그의 모든 변경 내용을 발효일 30일 전에 하원 상임 정보특별위원회와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장관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 위원회에 위와 같은 최소화 절차와 즉시 발효되어야 하는 사유를 즉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내국인” 개념의 문제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북한을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내국인으로 보지 않는 결과가 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Ⅲ. 국가정보원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 ‘내국인 범죄수사’인 경우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국정원의 감청 남용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한 포털업체의 2008~2009년 1월치 감청 협조 대장을 보면, 국정원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통비법에는, 국정원이 우리나라 사람의 통신을 엿들으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를 자기들만 아는 점을 이용해 감청을 남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¹¹⁾
- “4월 10일 알려왔습니다”: “국정원 엿듣기’ 지금도 이 지경인데...’ 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 사람의 통신을 엿들으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국정원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용이 의심된다는 부분에 대해,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에 내국인의 범죄수사 목적으로 감청을 할 때는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¹²⁾
-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사법경찰관에 국가정보원법 ‘제16조(사법경찰권)’ 조항, 즉 “국정원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

11) 한겨레 2009.4.9.

12) 한겨레 2009.4.10.

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7.12.4, 1994.1.5, 1999.1.21> [전문개정 1981.12.31]”는 조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

- 그렇다면 검사에 대해 허가를 신청(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하는가?
- 그렇다면, 제13조 제7항에서 굳이 사법경찰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제13조의4 관련 자료제공?]을 구별한 까닭은?
- 다만 ‘2002년 7월 1일 개정법률 -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까지의 제13조¹³⁾에서 2005년 8월 27일 개정법률을 통해 제13조의4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가 안된 것인가?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위한 수치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문제 있음(전자는 법적 가능성 거의 없음,¹⁴⁾ 후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너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임, 성과가 없었다면 남용 아닌가 하는 의문).¹⁵⁾

13) 2002년 3월 30일 개정에서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가 신설되면서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4)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해외여행·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15) 법무부가 제공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죄명별 감청현황 통계를 보면, 살인 603회, 절도·강도 48회, 성폭력범죄 27회, 미성년자 약취·유인 18회 등에 비해 국가보안법위반이 1023회에 달하고 있다. 오길영, 앞의 글, 176쪽에서 재인용.

-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의 정보수집 활동과 제13조의4의 정보 수집활동 관련 건수는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닌지 의문.
- 그런데 2007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7년 8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 국정원이 신청한 전기통신 감청은 10건인데, 지검에 신청한 전기통신 감청은 314건임(피의자 또는 내사자별?) - 2006년 정보통신부 자료에는 870건임(문서별?)
 -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규정을 이를 달리 규정할 만큼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삭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미국과 같은 예외 이외에는 아예 통신제한조치 등을 범죄수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조항에 따라 제13조 제7항(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면, 제13조의 제7항과 같은 규정이 제13조의4에 별도로 설치됨으로써 수사활동과 정보활동을 분리해야 함
- 그렇지 않다면 수사활동의 이름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함으로써 권한남용의 위험이 있음
- 이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서는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와 함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현황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제13조의4에서 준용하지 않는 규정].

1. 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

- 국가정보원 감청 ‘과잉’: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너무나

도 분명함.

- 더욱이 직접 감청한 것은 아래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 정보활동인지 수사활동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인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인데, 감청 건수 또는 전화번호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감청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사에 도움을 받아 기소하여 유죄 처벌에 이르렀는지 의문 - 만약 그 사건 수가 많지 않다면 무리하게 ‘바닥 끌그물(저인망)’식으로 감청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가정보원은 한 문서당 8.5건의 전화번호 감청).
-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 협조
- 기관별 감청 현황¹⁶⁾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07	상반기	18	39	555	11	623
	하반기	6	42	455	23	526
	합계	24	81	1,010	34	1,149
'08	상반기	6	32	562	8	608
	하반기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합계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1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9.4.7.

-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7	상반기	문서건수	18	39	555	11	623
		전화번호수	31	49	5,605	12	5,697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2	1.26	10.10	1.09	9.14
	하반기	문서건수	6	42	455	23	526
		전화번호수	10	46	3,023	27	3,106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67	1.10	6.64	1.17	5.90
	합 계	문서건수	24	81	1,010	34	1,149
		전화번호수	41	95	8,628	39	8,8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1	1.17	8.54	1.15	7.66
'08	상반기	문서건수	6	32	562	8	608
		전화번호수	8	44	5,563	10	5,62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	1.4	10.3	1.25	9.25
	하반기	문서건수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전화번호수	16 (60.0%)	50 (8.7%)	3,304 (9.3%)	9 (△66.7%)	3,379 (8.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0.0%)	1.16 (6.2%)	6.87 (3.4%)	1.13 (△4.2%)	6.21 (5.2%)
	합 계	문서건수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전화번호수	24 (△41.5%)	94 (△1.1%)	8,867 (2.8%)	19 (△51.3%)	9,004 (2.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2.3%)	1.25 (6.9%)	8.50 (△0.5%)	1.19 (3.5%)	7.82 (2.0%)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2.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확인 현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임
- 제공 대상: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공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07	상반기	13,058	73,572	488	5,617	92,735
	하반기	15,243	69,744	434	5,503	90,924
	합계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08	상반기	21,026	74,737	724	5,997	102,484
	하반기	21,571 (41.5%)	82,059 (17.7%)	550 (26.7%)	6,081 (10.5%)	110,261 (21.3%)
	합계	42,597 (50.5%)	156,796 (9.4%)	1,274 (38.2%)	12,078 (8.6%)	212,745 (15.8%)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군 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7	상 반 기	문서건수	13,058	73,572	488	5,617	92,735
		전화번호수	52,403	512,879	9,051	17,430	591,76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4.01	6.97	18.55	3.10	6.38
	하 반 기	문서건수	15,243	69,744	434	5,503	90,924
		전화번호수	39,305	147,951	1,429	10,786	199,471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58	2.12	3.29	1.96	2.19
	합 계	문서건수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전화번호수	91,708	660,830	10,480	28,216	791,234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3.24	4.61	11.37	2.54	4.31
'08	상 반 기	문서건수	21,026	74,737	724	5,997	102,484
		전화번호수	57,820	138,423	2,220	11,655	210,11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7	1.9	3.1	1.9	2.1
	하 반 기	문서건수	21,571 (41.5%)	82,059 (17.7%)	550 (26.7%)	6,081 (10.5%)	110,261 (21.3%)
		전화번호수	55,816 (42.0%)	167,147 (13.0%)	1,828 (27.9%)	11,991 (11.2%)	236,782 (18.7%)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59 (0.3%)	2.04 (△4.0%)	3.32 (0.9%)	1.97 (0.6%)	2.15 (△2.1%)
	합 계	문서건수	42,597 (50.5%)	156,796 (9.4%)	1,274 (38.2%)	12,078 (8.6%)	212,745 (15.8%)
		전화번호수	113,636 (23.9%)	305,570 (△53.8%)	4,048 (△61.4%)	23,646 (△16.2%)	446,900 (△43.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67 (△17.7%)	1.95 (△57.7%)	3.18 (△72.0%)	1.96 (△22.8%)	2.10 (△51.2%)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3.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 현황

- 통신자료제공: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人的事項을 요청하는 제도임
- 제공 대상: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07	상반기	37,602	164,508	4,191	23,233	229,534
	하반기	35,162	140,773	3,432	17,507	196,874
	합계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08	상반기	47,540	158,576	4,568	20,550	231,234
	하반기	44,071 (25.3%)	173,401 (23.2%)	3,816 (11.2%)	22,046 (25.9%)	243,334 (23.6%)
	합계	91,611 (25.9%)	331,977 (8.7%)	8,384 (10.0%)	42,596 (4.6%)	474,568 (11.3%)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7	상반기	문서건수	37,602	164,508	4,191	23,233	229,534
		전화번호수	418,869	1,689,554	26,276	91,504	2,226,2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14	10.27	6.27	3.94	9.70
	하반기	문서건수	35,162	140,773	3,432	17,507	196,874
		전화번호수	454,554	1,567,704	23,719	52,226	2,098,2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2.93	11.14	6.91	2.98	10.66
	합 계	문서건수	72,764	305,281	7,623	40,740	426,408
		전화번호수	873,423	3,257,258	49,995	143,730	4,324,406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2.00	10.67	6.56	3.53	10.14
'08	상반기	문서건수	47,540	158,576	4,568	20,550	231,234
		전화번호수	555,459	1,807,233	29,666	137,922	2,530,280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68	11.40	6.49	6.71	10.94
	하반기	문서건수	44,071 (25.3%)	173,401 (23.2%)	3,816 (11.2%)	22,046 (25.9%)	243,334 (23.6%)
		전화번호수	506,094 (11.3%)	1,963,026 (25.2%)	25,424 (7.2%)	131,027 (150.9%)	2,625,571 (25.1%)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48 (△11.2%)	11.32 (1.7%)	6.66 (△3.6%)	5.94 (99.2%)	10.79 (1.2%)
	합 계	문서건수	91,611 (25.9%)	331,977 (8.7%)	8,384 (10.0%)	42,596 (4.6%)	474,568 (11.3%)
		전화번호수	1,061,553 (21.5%)	3,770,259 (15.7%)	55,090 (10.2%)	268,949 (87.1%)	5,155,851 (19.2%)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59 (△3.5%)	11.36 (6.4%)	6.57 (0.2%)	6.31 (79.0%)	10.86 (7.1%)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IV. 통신사실확인 자료보관의 의무화¹⁷⁾

- 이한성법안: 제15조의2의 제목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독일 전기통신법의 번역은 전적으로 박희영, “유럽 공동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 *법제*, 2008.8, 130-154쪽에 의존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독일 전기통신법 제113a조 데이터 저장 의무 :

(1)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그가 생성하거나 처리한 통신데이터를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준에 따라 6개월간 독일 또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안에서 저장할 의무가 있다. 자신이 직접 통신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처리하지 않고서 이용자를 위해서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전기통신망을 제공하는 자는 제1문에 의한 데이터가 확실히 저장되도록 해야 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를 연방통신망중개소의 요구에 따라 알려야 한다.

(2)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을 저장한다.

1. 송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다른 표지 및 전환접속 또는 중개접속인 경우 이에 참여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다른 표지.
2. 전화접속의 시작과 종료의 표준시간대에서의 날짜와 시간
3. 전화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
4.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 a) 이동 가입자의 송수신 접속을 위한 국제적 식별 표지
 - b) 송수신 단말기의 국제적 표지
 - c) 송수신 접속을 통해서 접속을 시작하는 경우 이용되는 무선국의 명칭
 - d) 선불 익명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첫 활성화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무선국의 명칭

5. 인터넷 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송수신 접속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제1문은 간단정보, 멀티미디어정보, 이와 유사한 정보(Nachricht)의 중개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1문 2호의 정보 대신에 정보의 송신과 발신의 시점을 저장하여야 한다.

(3)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저장한다.

1. 정보(Nachricht) 발신의 경우 전자우편함의 표지와 발신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및 정보수신자의 전자우편함의 표지
2. 정보가 전자우편함으로 도착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자우편함의 표지 및 발신한 전기통신장치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3. 전자사서함에의 접근인 경우에는 그것의 식별부호(Kennung)와 접근한 자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4. 제1호내지 3호에 언급한 서비스의 시점의 표준시간대에서의 날짜와 시간

(4)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저장한다.

1. 인터넷이용을 위해서 참여자에게 할당된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2. 인터넷 접속을 하게 하는 연결시설(장치)의 독자적인 표지
3. 할당받은 인터넷프로토콜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시작과 종료의 표준시간대상의 날짜와 시간

(5) 전화호출에 대한 대답이 없거나 통신망 관리의 침해로 전화호출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서비스 제공자가 본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신

데이터를 제96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한, 그 통신데이터도 이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 저장하여야 한다.

- (6)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저장된 정보(Angaben)를 변경하는 자는 원래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및 이러한 정보의 변경 시점에 대한 표준시간대상의 날짜와 시간을 저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7) 공중을 위해서 이동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 저장된 무선전화의 통화가능범위의 표시에 대한 데이터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로부터 각 무선전화의 통화가능범위(Funkzelle)를 관리하고 있는 무선안테나의 지리적 상황 및 이것의 주방사의 방향이 발생한다.
- (8) 통신의 내용과 접근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장되어서는 아니된다.
- (9) 제1항내지 제7항에 의한 데이터는 정당한 지위자의 정보요청에 지체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 (10) 이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자는 저장된 통신데이터의 질과 보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자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그가 특별히 허가한 사람만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11) 이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해서만 저장된 데이터를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소거하거나 소거를 확보해야 한다.

- 독일 전기통신법 제113b조 제113a조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의 사용 :

제113a조에 의한 의무자는 오로지 제113a조의 저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1. 범죄의 소추,

2.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위협의 방지,

3. 연방 및 주의 헌법보호청, 연방비밀정보기관, 연방군 안보국의 법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113a조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전달이 명령된 경우에 한 한다; 의무자는 제113조에 의한 정보의 제공의 예외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13조 1항 4문은 이를 준용한다.

- 독일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¹⁸⁾ 통신데이터의 저장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Der Arbeitskreis Vorratsdatenspeicherung, 약칭 : AK VDS 또는 AK Vorrat)은 2006년 9월 이후부터 통신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기존의 법률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시민소송을 제기하도록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고, 그 결과 2007년 연말까지 80.000명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였고, 약 30.000명이 문서로 그 연합의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단체는 2007년 12월 31일 통신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하루 전 헌법소원심판과 가치분명령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헌법소원에 관계하는 헌법소원청구권자가 거의 30.000명이나 되어 이들의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

18) 박희영, 앞의 글, 148-150쪽에서 발췌.

는 8명으로 등록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29일 최종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이 시기에 34.451로 증가하였다) 모두 등록되었다.

- 연방헌법재판소: 2008년 3월 11일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¹⁹⁾
- 청구사유: 첫째, 가처분명령의 방식으로 전기통신감청법률 중 전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b조의 규정은 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본안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중지해 줄 것, 둘째, 유럽공동체 통신데이터의 저장 지침 2006/24/EG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유럽법원에 제소할 것, 셋째, 전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b조는 기본법 제10조(통신의 자유), 제2조 1항 및 제1조 1항(정보자기결정권), 제5조(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12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4조(재산권보장의 자유) 및 제3조 1항(법 앞의 평등)과 일치할 수 없음을 선언해 줄 것 등이다.
- 심판회부결정²⁰⁾의 사유

= 1. 유럽공동체 지침을 전환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침해된 법률이 강

19) 박희영의 주: BVerfG, Beschl. v. 11.3.2008 - 1 BvR 256/08(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s20080311_1bvr025608.html); HRRS 홈페이지: <http://www.hrr-strafrecht.de/hrr/bverfg/06/2-bvr-2219-06.pdf>; MMR 2008 Heft 5, S. 303-308; CR 5/2008, S. 287-291.

20) 박희영의 주: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감청법률(BGBI Teil 1, S. 3198) 중 전기통신법 제113b조 1항은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단지 다음의 조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전기통신법 제113a조에 의해서 저장된 전기통신 데이터와 관련을 가지는 형사소송법 제100g조 1항에 의한 형사소추기관의 제출요구를 근거로 하여, 제출요구에 책임을 지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자는 요구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제출명령에 의한 수사절차의 대상이 형사소송법 제100a조 2항에서 지정한 범죄이고, 동조 제100a조 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는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0g조 1항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데이터의 전달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그는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 또한 제삼자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에 2008년 9월 1일까지 전기통신법 제113a조에서 규정한 데이터 저장과 당해 가처분명령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주와 연방검찰총장은 그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3. 또한 청구권자의 가처분 명령의 신청은 거부된다. 4. 독일은 가처분명령의 공포신청의 절차에서 필요한 경비의 3분의 1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적인 공동체 규정을 벗어나 있거나 또한 공동체의 법률규정이 공동체법 제230조에 의해서 무효선언에 대한 신청이 유럽법원에 신청 대상이 되어 그 절차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 2.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강제적인 공동체법을 전환하는 법률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법률의 실행으로 당사자에게 특별히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즉 그 손해의 비중은 긴급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본안에 대한 결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게 해야 한다.
- = 3. 6개월 동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생성되는 전체 통신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본법 제10조 1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격권보호에 중대한 위협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가능성은 국민의 통신행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사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전기통신교환의 무편견성과 전기통신장치의 편견 없는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전체적으로 의심케 할 우려가 있다.
- = 4. 가치분 명령과 관련하여 형사소추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00b조 제1항 1문의 조건하에서만 전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b조에 의한 데이터의 저장과 평가를 위해 책임을 지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전기통신법 제113b조 1문 1호 및 형소법 제100g조에 의한 제출요구를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요구에 대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추기관이 발견한 결과물이 제100a조 2항에 의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100a조 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제출명령(형사소송법 제100b조 제1

항과 2항 및 제100g조 2항)에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결과물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기관의 발견 결과물은 통보되어서는 아니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기통신법 제113a조 11항의 삭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발견된 결과물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아니되고, 이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09년 2월 27일 독일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비스바덴(Wiesbaden) 행정법원은 전 주민의 전화, 휴대폰,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 사용의 전량 기록(“자료 보관”으로 알려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시했다(6 K 1045/08.WI). 즉 “법원은 자료보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지는 않다. [...] 지침[자료보관에 대한]은 ECHR 제8조가 보장하는 비례성원칙을 위배된다.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다.”²¹⁾
- 2009년 3월초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 또한 “특정의 이유 없이 또는 전면적 범위로 모든 인터넷 사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 헌법을 “침해”한다고 경고하였다.²²⁾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최장 1년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고, 기본권 제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함.

21) <<http://www.vorratsdatenspeicherung.de/content/view/301/55/lang,en/>>, 검색일: 2009.4.17.

22) 위와 같음.

V. 그 밖의 문제

1.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축소

- 이한성법안에서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여전히 제5조 통신제한조치 대상인 범죄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더 조정할 필요 있으며, 그것은 통신제한조치 통계를 보면 그것이 필요한 범죄대상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임(물론 전적으로 그 통계에 의존할 수 없지만, 그 범죄유형과 범죄정도에 따라 축소할 수 있을 것임)
- 그런 취지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²³⁾

23) 제36조 (벌칙) ①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②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제11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제37조의 죄를 단순히 추가하기보다 굳이 필요하다면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제36조의 제1항의 죄’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죄²⁴⁾는 단순히 기업에 관한 범죄이므로 이것은 제외함이 바람직함.

2. 위치정보의 추가

- 통신과정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고,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통신의 결과 발생하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치가 파악되므로,²⁵⁾ 별도의 법리적 평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34조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24) 제18조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3 (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²⁶⁾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제3조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금지’가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이냐는 논의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보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3.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조항

- 만약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가기관에 있어서 감청설비 도입은 금지되는가(?) - 아니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만이라도 최소한 기존의 장비를 폐하고 새로운 도입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그렇지 않다면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수사기관 등에게는 양수결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있을지 몰라도 이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 헌법상 통신 비밀의 자유라는 방패가 유명무실하게 된 국민은 팬옵티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6) 휴대전화, 차량용 네비게이션 기기, 여행지의 사진위치를 기록하는 소형 카메라 제품, 유아의 실종이나 유괴에 대비한 GPS 추적기능 의류 등이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의 휴대폰이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기종이라면 5미터 근처까지 추적가능하다. 오길영, 앞의 글, 186쪽.

VI. 맺음말

- 현재 상황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입법권의 보조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 발동]를 통해 개정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 그것을 실제 나중에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 예컨대 (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함.

진 술 요 지

강 신 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통신비밀보호법안’ 공청회 진술인 의견서

강 신 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책임연구원)

1. 서 론

- 이 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쟁점 이슈 중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는 감청협조설비의 오남용 우려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2. 쟁점 이슈에 대한 의견

- 이 장에서는, 금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중점 이슈로 제기된 사항중 일부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중점 이슈에 대해 의견을 기술함.

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 현행 통비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통비법 개정법률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치정보로,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GPS 위치정보를 의미
 - GPS 위치정보는 GPS 기능 탑재 단말기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와 GPS 위치정보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보임
 - 다만, 위치정보의 정밀도는 차이가 있음 (기지국 위치정보: 반경 수백미터, GPS 위치정보: 반경 수십미터)
-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통비법 개정법률안 제15조2 6항에서는 위치정보를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저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됨

②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

- 의견 없음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 (직접 또는 간접방식의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 방식의 개념에 대해, 그 이해가 서로 상이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함
- 간접방식의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여 감청을 하게 한 후, 감청된 결과만을 제공 받는 것을 의미
- 직접방식의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여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이 관련 감청 장비를 보유하여 감청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
 - ※ 내국인의 이동전화 등을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통비법 개정법률안 제17조 1항 1호)
-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④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

- 의견 없음

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방식(일괄 또는 개별청구, 사전 또는 사후허가 등)

- 의견 없음

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 및 제공사실 통지절차

○ 의견 없음

⑦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감청장비 등 구비의무, 비용부담주체 및 기존 사업자의 의무구비기간 등 포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 할 경우, 영세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진입 장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 개정법률안 제15조의2, 4항은,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개정법률안 제15조의2, 2항은,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서는 규정된 기간 안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17대 국회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 저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으며, 설비 구축기간 유예절차를 통해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칙에 반영한 바 있음

- 따라서, 통비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영세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과 신규 서비스 도입의 저해요인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좀 더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초기구축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⑧ 신고포상금

- 의견 없음

3. 기타 이슈에 대한 의견

- 이 장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중, 통신사업자에게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는 감청협조설비의 오남용 우려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의견을 개진함.

1) 감청 집행에 대한 오남용 우려

- 감청 집행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감청 집행기관에 의한 오남용 우려와, 감청설비 운용자에 의한 오남용 우려가 존재
 -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 등 감청 집행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 감청 집행에 대한 우려
 - 감청설비 운용자의 불법적인 감청설비 운용, 감청을 통해 취득된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감청 정보 누설 우려

○ 이러한 감청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청 집행기관과 감청설비 운용기관의 불법적 감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도적 해결방안과 기술적 해결방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적정 비용으로 감청 오남용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

2) 감청집행 오남용 우려 해소 관련 국외 사례

○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집행의 오남용 우려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합법적 감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간접감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남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감청법이라 부르는 CALEA 제105조에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감청설비에 대해 보안성을 갖출 것을 요구

※ 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미국의 Communications Act 제229조는 CALEA 시행 관련하여 감청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사항 명시

- 인가자 또는 비인가자에 통신 감청이나 접근에 대한 기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존하여야 함

- 통신사업자들이 CALEA 105조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FCC가 제정할 것을 규정

○ FCC는 CALEA 105조 시행을 위해 “System Security and Integrity Regulation” 제정

- 통신사업자는 적절한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통신을 감청하거나 감청된 정보에 접근한 모든 기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존해야 함

※ 64.2104: Maintaining Secure and Accurate Record

□ 독일

○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전기통신감청령)에 감청 오남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 명시

○ 감청령 제14조(보호요구사항)에 감청설비를 운용하는 협조의무자에 대해 보호조치 명시

- 감청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감청 설비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 마련

- 감청 사본이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접근되거나, 권한 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강구

○ 감청령 제16조(기록)에 감청설비의 오남용 차단을 위한 감청설비 운용 및 관련 로그기록의 관리에 대한 보호조치 명시

- 감청협조의무자는 감청설비 운용에 대한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함

- 감청 집행을 시행하는 감청설비 운용자는 로그기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삭제가 불가

- 감청설비 운용에 대한 로그기록 데이터는 로그기록 관리 책임자만이 접근 가능

※ 로그기록에 대한 삭제 기능 이용시, 삭제 기능 이용시간,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하고, 2년 이상 보관

□ 유럽연합

- 유럽 표준기구인 ETSI에서 개발되는 표준에 감청에서의 보안 유지와 오남용 방지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

- 법 집행기관은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에 접근할 수 없음
- 감청 설비에 대한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승인되지 않은 사용에 대하여 기계적, 논리적으로 안전해야 함
- 감청설비 운용자(통신사업자)는 감청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영구 보존할 수 없음
- 승인된 자만 감청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안 기능이 필요함
- 감청 설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설비의 이용에 대한 정보는 국가의 규제에 따라 모두 저장되어야 함
- 통신사업자에 의해 로그 기록이 부정 조작되지 않고, 인가자 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상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 설비를 구축 및 운용함으로써 감청 오남용 방지 추진

3) 감청 오남용 관련 통비법 개정법률안 검토

□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통비법 개정법률안은 정보·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감청 집행 및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불법적 감청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통비법 개정안 제17조(벌칙) 1항 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기관등에 감청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

※ 통비법 개정안 제15조의 4: 수사기관 및 통신사업자의 불법적 감청 사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 통비법 개정법률안은 통신사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감청설비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함

- 제15조의2, 5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3항: 통신사업자가 구축할 감청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5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세부사항이 기술표준에 반영될 예정

□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 감청 집행기관과 감청설비 운용기관의 분리를 통해 감청 집행기관에 의한 오남용 우려를 차단하는 간접감청 방식 도입

-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를 표준인터페이스로 분리하고, 통신사업자는 감청된 감청정보만을 수사기관에 암호화 통신으로 전달
- 통비법 개정법률안은 국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청 설비의 불법적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제도적, 기술적 조치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될 예정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보호조치에 감청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이 명시되면, 이에 대한 기술표준 제정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될 예정임

□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안

- 통신사업자에 의해 취득된 감청정보에의 비인가자의 접근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 감청된 내용정보를 통신사업자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집행기관에 암호화 통신으로 안전하게 전달
- 감청설비 운용에 대한 모든 로그기록을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법집행기관(정보·수사기관) 및 감청설비운용자(통신사업자)에 의한 감청설비 오남용 시도 예방 및 불법 감청 적발
- 감청설비 운용 로그기록에 대한 보호 방안
 - 사업자 감청설비 내 특정의 안전한 영역에 로그기록을 저장, 관리하여 로그기록 관리자 이외에는 시스템 운용자도 특정 영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

- ※ 로그기록을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 차단 등
- 로그기록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로그기록 정보를 분산 관리하는 방안 고려
- ※ 중요한 로그 정보는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감청 시스템 내부에 기록됨과 동시에 원격지 시스템에 동시 기록 (법원 등)

진 술 요 지

문 승 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의견서

문 승 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I. 개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II. 중점 진술사항 및 검토의견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현행법	이한성 의원안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 사. (생략)</p> <p><신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 사. (생략)</p> <p><신설></p> <p>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p>

- 위치 정보는 ‘발신통화시 기지국 위치자료’와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에 근거한 ‘위치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신통화시 기지국 위치자료’는 통화기록을 이용한 발신키지국 위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통화정보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이 가능하나
-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에 근거한 위치정보는 주기적으로 사업자망에 저장되는 형태가 아님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

이한성 의원안

-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범위(삭제 또는 추가)는 국가 고유의 영역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

박영선 의원안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해야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직접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 및 사유를 공개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고객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가입자의 불만이 통신사업자에게 더욱더 전가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이유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가입자는 다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 하는 이중 불편이 예상됨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현행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감청장비 등 구비의무, 비용부담주체 및 기존 사업자의 의무구비기간 등 포함)

현행법	이한성 의원안
<p>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들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들은----- ----- ----- -----.</p> <p>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 <p><부칙></p> <p>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전화사업자: 이 법 시행 후 2년 2. 그밖의 전기통신사업자: 이 법 시행 후 4년

○ 감청장비 등 구비의무에 대한 의견

-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통신제한조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내용 보관과 관련된 장비를 사업자가 구비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협조업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예상비용 산출의 어려움

-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위한 장비개발, 시설의 설치 및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감청 장비 설치비용, 설비 후 정상적인 감청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확보, 교육 등 설치비용, 운용에 따른 비용 등)
- 감청장비에 대한 기술표준 부재, 통신망에 대한 영향분석, 세부적인 감청 대상 범위 및 설치방안 모호 등으로 소요비용 산출이 어려움

○ 의무구비기간에 대한 의견

- 통신사업자마다 환경(시스템, 서비스 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구비기간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구비기간은 통신시스템 개발업체, 감청설비업체에 의존도가 높아 통신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감청설비 표준제정, 기능개발 및 전체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충분한 검증기간을 고려하여 구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사항

(1) 구비기간 산정 시 검토사항

- 필요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 분석과 기술 규격(법률안 제15조의2 제 ③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정하도록 함) 마련을 위한 기간
- 통신사업자가 기능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용량, 성능, 품질, 장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운영규격 마련을 위한 기간
- 기술규격에 따른 제조업체의 장비 개발 및 기능 개발 기간
- 장비의 설치, 통신설비에 기능 구현 등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기간 등

(2) 일반적인 설비구축 기간

- 요구사항 검토 : 1~2개월
- 국제/국내 표준검토 : 6개월 ~ 1년
- 제조사 협의 : 2~3개월
- 설계 및 구축 : 1년
- 사업자 검증 : 3개월
- 시범적용 : 3개월
- 안정화 및 상용화 : 3개월

□ 신고포상금

이한성 의원안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15조의4 신설)

-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호 및 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적극 찬성함

□ 그 밖의 제도개선 과제 : 의견 없음

진 술 요 지

구 태 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서

구 태 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1. 쟁점에 대한 의견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이한성 의원안)

- ‘위치정보’의 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절차에 포섭시킴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규제에 따르게 하는 방안은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됨

②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이한성 의원안)

- 사용빈도가 거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 34개의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기술유출범죄가 국익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²⁷⁾

27)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슈는 아니나, 2008. 4. 10.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다루던 내부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영업비밀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중대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였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4조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직접 또는 간접방식의 통신제한조치)(이
한성 의원안)

-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직접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④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박영선 의
원안)

- 기본적으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한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배달이 완료된 우편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임에도 이와 같은 통지제도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통지에 있어서는 지나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통지제도를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규율대상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²⁸⁾’의 범위가 정의상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안이 의도하는 ‘이메일(email)’ 이외에도 온라인 게시판에 저장된 게시물,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 주고 받은 전자문서, 기업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회계정보·영업비밀정보, 온라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결제정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주문

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취득’을 ‘유출’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8)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 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등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정보 교환 형태가 모두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인 바, 이들도 과연 규율대상인 것인지 의문임. 그렇다면,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는 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에 다름 아님.

- 그 밖에, 법안 중 아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임

- 1) 통지대상자를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의 송신자·수신자로 규정한 부분 - 오히려 전기통신가입자로서는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자신과 전기통신을 한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오히려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배달이 완료된 우편물의 경우 압수·수색을 하였을 경우에도 송신자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통지대상자를 전기통신가입자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서면으로만 통지방식을 한정된 부분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통지대상자가 외부에 압수·수색사실을 노출당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에 가입한 경우 ‘서면·전기통신 기타 방식으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통지대상자가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전기통신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실명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통지를 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⑤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방식(일괄 또는 개별청구, 사전 또는 사후허가 등)(변재일 의원안)

- 일괄 또는 개별 청구 부분

- 법안이 의도하는 바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개별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청구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불편이 증가되기는 하나, 그로 인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남용이 방지되는데 충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해킹범죄 등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아이디(ID) 또는 전화번호 등 가입자 식별부호 만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 없어 결국 법안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 법원의 사전 허가 부분

- 납치 사건 등 실제 긴급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확보가 긴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후 허가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아도 되는 요건인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 및 제공사실 통지절차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변재일 의원안)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경우, 국가안전보

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은 현재에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이한성 의원안)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금융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되,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통지의 정확성, 신속성, 비용 부담을 적절한 균형있게 조절한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사료됨

⑦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감청장비 등 구비의무, 비용부담주체 및 기존 사업자의 의무구비기간 등 포함)(이한성 의원안)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등 구비의무를 지우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서만 감청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접근기록을 관리하여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법안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감청장비 구매 및 운영비용은 영세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지나친 비용이 될 수 있으며 시장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존 사업자의 의무구비기간을 이동전화사업자는 2년,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으로 규정한 법안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2. 개정안의 기타 조항에 대한 의견

①통신자료 제공 관련 규정의 도입(최문순 의원안)

-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 제공절차를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옮기고, 그 통지제도를 도입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통신자료는 통신의 비밀의 한 부분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내지 학술단체 등의 가입자정보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와 달리 구체적인 전기통신의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이므로 보다 통신의 비밀해당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기통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내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⁹⁾, 현행 법령 체계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 가입자가 자신의 가입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6.13]

고 보이며, 유독 전기통신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통지제도를 도입하고 그 미이행시 처벌규정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임)

②통신사실 확인자료 개별 제공요청 관련 처벌규정의 도입(변재일 의원안)

- 법안은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각각의 허가요청서에 의하여 제공요청을 하게 하고, 이에 위반하여 허가요청을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허가요청을 각각의 요청서에 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처벌을 신설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하기도 전 단계에서 단순한 ‘요청’만 하여도 바로 처벌을 하도록 하며, 형량도 불법 감청과 동일한 형벌(벌금형도 없는)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으로 사료됨

진 술 요 지

이 은 우

(진보네트워킹센터 운영위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은 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I. 이한성 의원안에 대하여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급

-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요건 아래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서면의 기재사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 국한됨.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원래 ‘통신의 비밀’, ‘통신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통화대상자, 통화도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의 비교]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요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대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 기재사항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후의 조치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2007년과 2008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를 보면, 2007년에 문서건수로 183,659건, 전화번호수로 791,234건, 2008년에 문서건수 212,745건, 전화번호 수 446,900건.
- 2007년 1일 평균 2,168건, 2008년 1일 평균 1,224건.

나.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1. 24시간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됨. 통신제한조치의 경우는 통화시만 기본권 침해되나, 이는 24시간 기본권 침해됨.
2. 실시간 추적도 가능할 수 있음.
3. 이는 결국 전국민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같음.
4. 현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는 법원에 소명자료의 제출도 필요 없고, 대상범죄도 제한 없음.
5. 긴급한 사유로 요청하여 제공받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음.
6.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의 취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4시간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방법의 민감도를 고려한다면 '긴급통신제한조치'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휴대전화의 경우는 원하지않는 경우 이용자가 GPS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함.

2.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설)

- 현행 법에 의하더라도 금지되고, 형사처벌 됨.

3.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 타당함.

4.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 일본의 경우 대상범죄는 매우 제한적임.
- 실제로 기술유출범죄를 통신제한조치로 검거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함.
- 오히려 악용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5.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 단순히 집행 위탁 뿐만 아니라, 참여권 보장 방안이 필요함.
-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 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통지유예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함.

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통지는 반드시 해당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함

8.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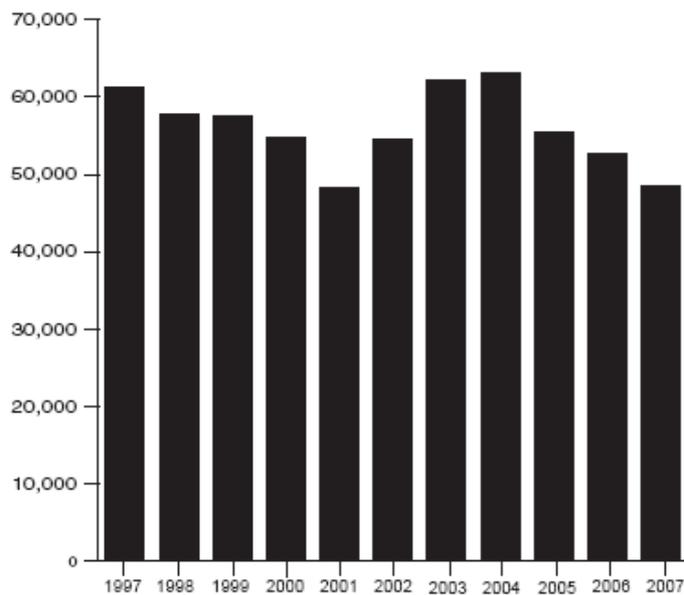
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가?

- 현재의 감청으로는 부족한가? 부족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캐나다의 경우 lawful access를 추진했으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함.
- 우리의 경우, 감청설비 도입시 약 5,000억원의 비용이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그렇다면 약 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 할 만큼 감청의 필요성이 있는가?
- 5,000억원으로 수사인력의 확충, 첨단 수사장비의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감청에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가?
- 미국의 경우 2007년에 감청건수는 2,208건(연방 457건, 24개 주 1,751건). 감청 1건당 평균 44일, 94명, 3,106 통화.

- 우리나라의 경우

나. 감청 집행비용

- 미국의 경우 감청 집행비용은 감청 1건당 48,477달러(한화 63,020,100 원) (연방 65,600달러, 주 43,584달러)



[감청 1건당 평균 비용 ; 달러]

다. 감청 설비와관련한 비용의 부담

- 감청과 관련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제89조 제1항, 3항에서 통신사업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청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그 기술적 요청의 범위와 기업의 비용부담의 범위를 하위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봄. (2003년 2월 27일 선고, VfGH, G 37/02 ua). 사법기관이 범죄수사의 목적에서 통신을 감시하

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인데,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봄.

- 미국, 영국, 독일 기타 각국의 입법에서도 감청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5억 달러의 Telecommunications Carrier Compliance Fund (TCCF)가 소진됨.

라.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은 반드시 필요한 수사방법인가?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 각국의 경우도 융통성 있게 접근함.
- 인권 침해의 문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교량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의 경우도 통신을 감청가능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폐기함.

마. 대상의 광범위함

- 개정안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전화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함.

바. 영업비밀 침해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감청

-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죄명별 감청 현황

순위	죄명	감청영장 발부 현황
1	국가보안법위반	1,023
2	살인	603
3	절도/강도	434(135/299)
4	뇌물수수/특가(뇌물·알선수재)/뇌물공여	96(31/39/26)
5	특가법위반(관세)	96
6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79
7	마약	48
8	성폭력범죄	27
9	미성년자 약취·유인	18
10	방화	18

- 감청기관별 감청현황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통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 감청비율(%)
2000	386	1,320	1,575	261	3,542	44.5%
2001	362	1,289	2,412	308	4,371	55.2%
2002	208	627	2,234	187	3,256	68.6%
2003	165	648	5,424	203	6,440	84.2%
2004	106	554	8,201	289	9,150	89.6%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상)	8	44	5,563	10	5,625	98.9%
2008(하)	16	50	3,304	9	3,379	97.8%
2008(전체)	24	94	8,867	19	9,004	98.5%

* 문서수가 아닌 실 감청대상별 감청통계

* 군수사기관:국방부및국군기무사령부

- 미국의 경우(2007년)

Reporting Jurisdiction	Total	Conspiracy	Corruption	Gambling	Homicide and Assault	Kidnapping	Larceny, Theft, and Robbery	Narcotics	Racketeering	Other
TOTAL	2,208	26	32	55	132	7	36	1,792	98	30
FEDERAL	457	2	3	-	-	-	-	427	11	14

- 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
- 특정기업의 영업비밀과 또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함.

사. 이행강제금

- 지나치게 높은 이행강제금은 문제임.

아. 결론

-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음

9.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의무 및 과태료 부과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 현행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신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의무를 부과할 경우의 어려움과 위험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를 질 경우 개인정보 보침해 우려가 높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시킴.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해야 함(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따라서 보존의무가 생기면 해당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야 함. 지나친 비용 부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위험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파산이 우려될 상황임.

-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1건당 202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음. 예를 들어 10만건의 정보 유출시 2천2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

II. 박영선 의원안에 대하여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압수수색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신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수신인이 해당 전기통신을 확인하였을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을 것임.

III. 변재일 의원안에 대하여

1. 소명자료의 첨부 의무

- 타당함

2. 통신제한조치 기간 단축

- 타당함

3. 긴급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 축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장전 담재판부에 구두로 야간당직 신청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함(안 제 13조제2항).

- 현재 남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임.
- 타당함

5.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 강화

- 타당함.
- 해외의 입법의 경우도 제한하고 있음.
-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여전히 문제임.

6. 국회로의 보고의무 강화

- 타당함

7.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 남용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므로 타당함.

IV. 최문순 의원안에 대하여

1.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 현재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이 남발되고 있음.
-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은 개인정보의 제공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함.
- 외국의 입법례의 경우도 혐의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함.

2. 통지

-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함.

진 술 요 지

김 민 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청회 진술요지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I. 개정 취지

-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이 제정된 이후 14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내용은 ①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강화, ②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③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 ④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⑤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 임
- 다시 말해서 통신제한 또는 감청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개정이 대부분이었음
-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환경이 통비법의 제정 당시와는 크게 다른 실정이며, 따라서 이제는 변화된 통신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통비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주지하는 바처럼,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의 가입자 통계만을 보더라도 변화된 통신환경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는 약 2,100만 정도에 이르는 반면, 휴대전화 가입자는 4,600여만명에 이르고, 인터넷전화를 비롯한 유사 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러한 통비법의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은 수사정보기관들이 감청 등을 오·남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됨
- 그러나 과거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와 통비법 개정 필요성의 문제는 분리하여 접근해야할 것임
-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국민 정서의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함으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이 때문에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개선은 불허하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의 엄격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
- 따라서, 통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①변화된 통신환경과 현행법의 괴리, ②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간의 비교형량 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할 것임
- 이하 에서는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개정(안)들의 쟁점에 대한 우리 단체의 입장을 진술하겠음

Ⅱ. 개정(안) 주요 내용

1.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안)

- 사업자의 휴대폰 감청협조설비 의무화
- 통신회사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수사정보기관 직접감청 금지)
- 수사목적 GPS 위치정보 추적 가능
- 감청 대상 범죄 축소
-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사실 통지절차를 직접통지에서 통신업체를 통한 간접통지로 변경
- 감청협조설비 비인가자 접근방지대책 의무화, 불법 감청 신고포상금제 도입

2.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 수사목적 감청 허가 청구 시 체포·증거수집 곤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 첨부
- 감청기간 축소(수사 2개월→1개월, 안보 4개월→2개월),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 폐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피의자별·피내사자별 청구 등 요건 강화
- 통지유예 시 검사장 승인 대신 법원의 허가 도입

3.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소법 규정에 의함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 종국 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 집행 사실 서면 통지

4. 최문순의원 대표발의(안)

-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
- 통신자료제공 사건 종국 처분 시 30일 이내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Ⅲ. 쟁점별 검토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할 경우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빅 브리더형 감시가 현실화 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런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위치정보”에 한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위치정보는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휴대폰 GPS 정보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보다 훨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매우 유용할 것임
- 문제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인데, 이러한 우려는 단지 위치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들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
- 따라서 현행법상 이미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들이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전·사후적 통제 하에 있다고 한다면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지금 보다 특히 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다시 말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막연하게 위치정보를 통신사

실확인자료에 포함하면 바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침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됨

-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

-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중 「형법」·「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의 죄를 삭제하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죄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유출죄 등을 추가하려는 것은
- 통신제한조치의 활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성격상 통신제한조치에 적절하지 아니한 범죄를 제외하고, 첨단기술 유출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직접 또는 간접방식의 통신제한조치)

-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안)은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직접 통신제한 조치를 하는 직접방식이 아니라 통신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취하는 간접 통신제한조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하다는 견해와, 이렇게 될 경우 감청이 가능하지 않은 통신서비스는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통신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반대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수사정보기관이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야만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자체 감청 설비를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청 등의 오·남용 소지를 차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통신업체에 설치하는 감청에 필요한 지원 설비는 감청설비가 아니라 감청협조설비이므로 통신업체는 감청협조설비를 통해서 감청대상자의 통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듣거나 볼 수 없고, 통신업체에서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은 암호화되기 때문에 통신업체가 불법감청을 할 여지는 없으며, 감청협조설비에 대한 접근은 전산으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불법감청 가능성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는 수사정보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간접적 통신제한 조치제도가 감청 등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사정보기관들마다 자체 감청 설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최소화, ②신규 통신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안의 마련, ③통신사업자에 의한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유출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감청설비의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은 외국의 사례를 비롯한 어떠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
- 따라서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감청설비 등의 구축 이후에 유지 및 보수관리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도 과도한 이행강제금 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4.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

(1)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 박의원(안)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 종국 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 집행 사실 서면 통지하도록 함
-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가 송·수신한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본인의 아니게 피의자에게 메일을 보낸 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압수·수색의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이것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off-line에서 종이문서로 작성된 메일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임
- 따라서 이 문제는 통비법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

- 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청 대상자와 교신한 모든 수신자 또는 발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듦
 - 따라서, 통지 대상의 범위를 수사대상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최문순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는 바, 양자는 그 이름이나 제공절차에 있어 유사하나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통신비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해당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통신자료제공도 통신 당사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최의원(안)의 주요 골자임
-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통신자료’는 그 내용이 통신서비스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자료가 통신비밀과 상관성은 없으므로 이를 통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음
-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통비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방식·사유·제공사실 통지 등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등 강화

- ①청구서 기재사유를 청구이유 이외에 혐의사실요지를 추가하고 ②허가요건을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로 강화하며 ③통신제한조치의 재청구시에는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구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듦

(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단축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①범죄수사의 경우는 2개월에서 1개월 ②국가안보의 경우는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정책적 판단 문제임
-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단축은 ①범죄의 특성상 단기간의 내사를 통해서 관련자 색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범죄들이 있고 ②기간을 제한하더라도 허가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청기간 단축은 오히려 감청 건수의 급증 및 빈번한 감청집행으로 인한 행정력 소진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③법원의 감청 허가 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규정상의 허가기간보다 단기간의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기간을 단축할 개정의 실익은 없고 ④빈번한 감청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함

(3)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시한 단축

-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긴급감청의 유예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 역시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됨
- 그런데, 긴급체포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48시간 유예를 두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연 24시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듦

(4)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유예 행사권자 변경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유예의 행사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통지유예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통신제한조치의 사후적 절차의 문제까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권한준중의 원칙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듦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적 통제 강화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①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하도록 하고 ②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은 가입자별로 하도록 하는 것은 연관성만 입증되면 1개의 허가서로도 피의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런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사 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혐의

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개정(안)이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제도의 폐지하고자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법원의 사후허가에서 사전허가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후허가의 남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이 문제 역시 ①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제도는 긴급감청제도와 함께 중대범죄 초동 수사에 있어 불가피하고 ②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 큰 감청이나 긴급체포도 법원의 사후 영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긴급하게 확보하도록 허용한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을 감안하면 개정내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됨

법 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안 · 박영선의원안 ·
최문순의원안 · 변재일의원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
----------	------

발의연월일 : 2008. 10. 30.

발 의 자 : 이한성 · 조윤선 · 손범규
이사철 · 임동규 · 이학재
성윤환 · 이춘식 · 신성범
조원진 · 안효대 · 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

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 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軍事法院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불법으로 취득한 내용 등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刑法”을 “「형법」”으로,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을 “제5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軍刑法”을 “「군형법」”으로, “第3章 指揮權濫用の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離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를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로, “제78조·제80조”를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 제4조의2·제4조의3의 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의 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 제10조 및 제11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제18조의3의 죄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죄

제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제6조(같은 조 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서면으로”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그 밖에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제2항 전단 중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을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제4항 중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통신제한조치보고서(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

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사용한 자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이 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③ 제11조2항(이 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이 조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제11조제1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1조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13조제1항·제13조의3·제13조의4(제2항을 제외한다)·제1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 통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동전화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2년
2.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4년

②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안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 사. (생략)</p> <p><신설></p> <p>12. (생략)</p>	<p>第2條(定義) -----</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u>각 목</u>-----</p> <p>-----.</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p> <p>12. (현행과 같음)</p>
<p>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p> <p>①누구든지 이 法과 <u>刑事訴訟法</u> 또는 <u>軍事法院法</u>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p> <p>①----- 「<u>형사소송법</u>」</p> <p>--- 「<u>군사법원법</u>」-----</p> <p>-----.</p> <p>-----<u>각 호</u>-----</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u></p>

	<p>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경우</p>
<p><신 설></p>	<p>②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③ (생략)</p>	<p>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の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4조(불법으로 취득한 내용 등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第5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p>	<p>第5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p>

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刑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야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각 호-----

1. 「형법」-----

-----제5장-----

다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② ~ ④ (생략)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④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생략)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 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

②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그 밖에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의 2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생략)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신제한조치보고

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
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서(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
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등은-----

-----.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
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
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
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
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
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
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신 설>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생략)

<신 설>

<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3조제1항을-----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사용한 자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략)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이 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이 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이 조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제11조제1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

<신 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략)

5의2. (생략)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1조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

2. ~ 6. (현행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삭 제>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 4. (생략)

<신설>

<신설>

1. 제3조제5항-----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
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예상됨(안 제13조의4제4항).
- 나.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위해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안 제15조의2).
- 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안 제15조의4).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가. 안 제13조의4제4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건수에 비례해 통지비용 부담 규모가 결정되나, 요청건수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법률만으로는 재정부담에 따른 추계가 어렵다.
- 나. 안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려면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인 장비, 시설, 기술, 기능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등을 이유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부간 사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용에 대한 추계가 어렵다.

다. 안 제15조의4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만을 근거로 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용에 대한 추계는 어렵다.

4. 작성자

국회의원 이한성 비서관 차진권(788-295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1
----------	------

발의연월일 : 2008. 11. 11.

발의자 : 박영선 · 박지원 · 양승조
이춘석 · 김유정 · 박은수
최영희 · 박선숙 · 이미경
김세웅 · 박주선 · 김재균
이한성 · 서병수 · 김충조
김효석 · 우윤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한다.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
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
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3
----------	------

발의연월일 : 2008. 12. 11.

발 의 자 : 최문순·송영길·오제세

변재일·박은수·이춘석

홍희덕·권영길·강기갑

이정희·곽정숙·김효석

장세환·양승조·이정현

천정배·김재운·우제창

의원(18인)

제안이유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음.

양자는 그 이름이나 제공절차에 있어 유사하나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통신비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해당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달리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사실 등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통신자료제공도 통신 당사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나.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3조의6 신설).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

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통신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성명

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가입자의 주소

라. 가입자의 전화번호

마.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부호를 말한다)

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일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7로 하고,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의7(중전의 제13조의5) 중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을 “제13조·제13조의4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5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에 관한”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로 한다.

제13조의5(재판·수사·국가안보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①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는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

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통신자료제공”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3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자

2. 제1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신 설>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재판·수사·국가안보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①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
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
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
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조세
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
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
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
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
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이하 “자

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한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
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6(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는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
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
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조의7(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
-----제13조·제13조의4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5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통신자료제공-----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제13조의7에 따라-----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신설>

③ -----제13조의7에 따라-----

④ -----제13조의7에 따라-----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
치한 자

2. 제1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
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9
----------	------

발의연월일 : 2009. 2. 11.

발 의 자 : 변재일 · 홍재형 · 최문순
최철국 · 이춘석 · 우제창
김영록 · 이종걸 · 백원우
강기갑 · 양승조 · 김종률
김상희 · 오제세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남용 및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 형사법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현행법 규정에 산재한 모호한 표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호가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이에 현행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며 통신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

고 범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에 있어서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36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항).
- 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함(안 제13조제2항).
-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못하도록 함.
-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 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제13조의4제1항).

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은 국회에 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사.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査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혐의사실 요지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제5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각 “2월”을 “1개월”로 한다.

제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다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4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36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을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우에는 요청사유”를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내사자별로 요청사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의4제2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 및 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와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자는 이 법에 위배되거나 범위를 벗어나 협조를 할 수 없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협조를 한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p>第6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 ~ ③ (생략)</p> <p>④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査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p>	<p>第6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u>혐의사실</u> 요지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u>제5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u>-----</p> <p>-----</p> <p>-----</p> <p>-----.</p>

⑥ (생략)

⑦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節次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通信制限措置期間의 연장을 請求할 수 있다.

⑧ (생략)

<신설>

第7條(國家안보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⑥ (현행과 같음)

⑦-----1개월

⑧ (현행과 같음)

⑨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다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第7條(國家안보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 (현행과 같음)

②-----2개월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 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④ (생략)

<신 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①·② (생략)

<신 설>

-----.

②-----

-----제6항 및 제13조

-----.

<삭 제>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 및 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와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

제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생략)

인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자는 이 법에 위배되거나 범위를 벗어나 협조를 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협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④ (현행과 같음)